

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33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10월 18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는 기능이 유사한 두 개의 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기관(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및 커리어플러스센터)을 통합하여 설립된 신규 민간위탁기관으로,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취업상담 및 알선, 일자리 개발, 현장훈련, 사후지도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
- 나.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고용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,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 등을 대상으로 본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, 이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

나. 센터개요

-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(대치동)
- 규모 : 연면적 975.64m²(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3~5층)
- 지원시설 : 사무실, 교육장, 상담실, 강당 등

- 위치도



다. 운영인력 : 30명(센터장 1, 사무국장1, 팀장 3, 일반직원 25)

라. 위탁기간 : 2026. 4. 1. ~ 2028. 12. 31(2년9개월)

마.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바. 위탁사무

- 장애인 일자리 연계 : 취업기관 간 정보·인력 연계, 직업능력평가 등
- 장애인 일자리 개발 : 장애인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구인업체 개발 등
- 장애인 일자리 지원 : 취업장애인 사후관리, 장기고용전략 수립 등
- 기타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목적에 맞는 사업 등

※ '13.8.7 준공된 행복플러스센터(연면적 1,669.48m²) 건물관리 위탁 포함

사. 민간위탁의 필요성

- 장애인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장애 특성별 맞춤형 취업상담·알선, 구인업체 발굴, 사례관리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,
-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케 함이 보다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
아. 소요예산 : 2,719백만원(2026년)

자. 심의결과 : 적정('25년 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제2항(장애인 고용촉진 추진)
-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 제3항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편성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정태영 (☎2133-7965)